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17일

발의자 : 정해숙, 진선아, 김경이, 양순임,
이용진, 경수현, 소형준, 정윤주,
이호건

1. 제안이유

성북구청 조직개편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 상임위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개정사항을 반영,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발의(안 24조)

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안 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3. 3. 17. ~ 2023. 3.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위원회와 위원”을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제6장 질서와 경호”를 삭제한다.

제61조 앞에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을 삭제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하고,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며, 제27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1조(중전의 제30조) 제2항 제2호가목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한다.

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속하는 사항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질서와 경호

제6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조 ~ 제26조</u> (생략) <u>제5장 위원회와 위원</u> <u><신 설></u> <u>제27조 ~ 제29조</u> (생략) <u>제30조</u>(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건복지위원회 가. <u>복지문화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략) 3. 도시건설위원회 <u><신 설></u>	<u>제24조</u>(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u>제25조 ~ 제27조</u>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위원회와 위원</u> <u>제28조 ~ 제30조</u>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u>제31조</u>(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u>복지교육국</u> ----- ---- 나. (현행과 같음) 3. ----- 가. <u>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속하는 사항</u>

가.·나. (생 략)

4. 행정기획위원회

가. ~ 다. (생 략)

라.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생 략)

제31조 ~ 제54조 (생 략)

제6장 질서와 경호

<신 설>

제55조 ~ 제60조 (생 략)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신 설>

제61조 ~ 제64조 (생 략)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행정문화국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 제55조 (현행 제31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질서와 경호

제56조 ~ 제61조 (현행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제62조 ~ 제65조 (현행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와 같음)